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도정책실 최형순 실장



목 차

- 01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요
- 02 조문별 주요내용
- 03 승강기 관련 고시 이해
- 04 승강기 관계 법령 이해

01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요(법령)

법률

국가 및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규범 중 강제적 구속력을 갖는 규칙

- 1991.12.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01.3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명칭 변경
- 2012.02.22 용어변경, 관리교육 주기 신설, 경력 신고 등
- 2015.08.11 공단설립, 점검결과 안전종합정보망 입력 등(시행: 2016.7.1)
- 2016.01.27 정밀안전검사 주기(매 3년) 신설, 불합격승강기 재검사 의무 등
- 2018.03.27 전부개정(안전인증 신설 등, 시행: 2019.3.28)

최근 주요 개정 내용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등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를 하나의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관련 규정을 통합
-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이관 (산업부 ⇒ 행정안전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확대(승강기 ⇒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 승강기부품 가격 공개 등 제조,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범위 확대
- 불량부품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승강기 부품제조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 관리주체의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
- 승강기 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승강기사업자간 협력 의무 신설
- 승강기 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 신설 등

50개 조문



82개 조문

01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요(법령)

시행령

법률 시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 명령(대통령령)
(2019.01.22 개정, 2019,3.28 시행)

시행규칙

법령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19.03.28 개정, 2019,3.28 시행)



01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요(법령)

고시(12종)

-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01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요(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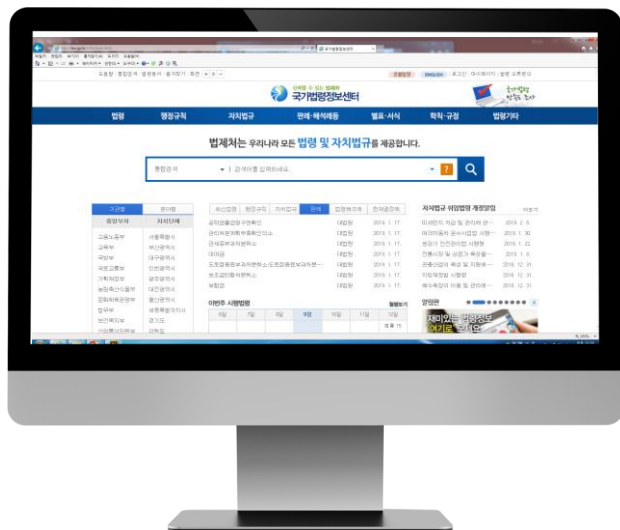
고시(12종)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 승강기 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01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요(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조문별 주요내용



00 승강기 안전관리법 조문 구성

총 9장, 본문 82개 조문, 부칙 24개 조문으로 구성



01 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

02 제2조 용어정리

승강기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승객용

사람의 운송

병원용

병원 침대 운반

승객화물용

사람 및 화물 운송

소방구조용

소방관의 소화 및 구조활동

피난용

화재 등 재난 시 피난활동

장애인용

장애인 등의 운송에 적합

전망용

외부 전망

주택용

단독주택 (12m이하)



화물용

화물용

화물운반 전용

• 운전자 1인 탑승

• 300kg 미만 제외

소형화물용

소형화물 운반

• 300 kg 이하
(바닥면적 0.5m²,
높이 0.6m 이하 제외)

• 사람 탑승 불가

자동차용

자동차 운반 (주차장)

에스컬레이터

형태 계단형

경사도 30°이하(최대 35°)

속도 30°이하(0.75m/s 이하)
30°초과 35°이하
(0.5m/s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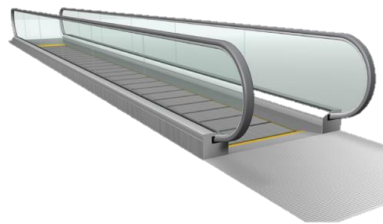


무빙워크

형태 평면형

경사도 12°이하(최대15°)

속도 0.75m/s이하
(0.9m/s허용)



경사형

형태 경사로 주행

경사도 75°이하(수평기준)

속도 9m/min 이하



수직형

형태 수직로 주행

경사도 15°이하(수직기준)

속도 9m/min 이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기계식 주차장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리프트



- 광산안전법에 따른 권양장치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승강설비
- 주한외국공관 등 시설의 승강기

(적용제외)

덤웨이터 바닥면적이 0.5 제곱미터이고
높이가 0.6이하인 것

02 제2조 용어정리

제조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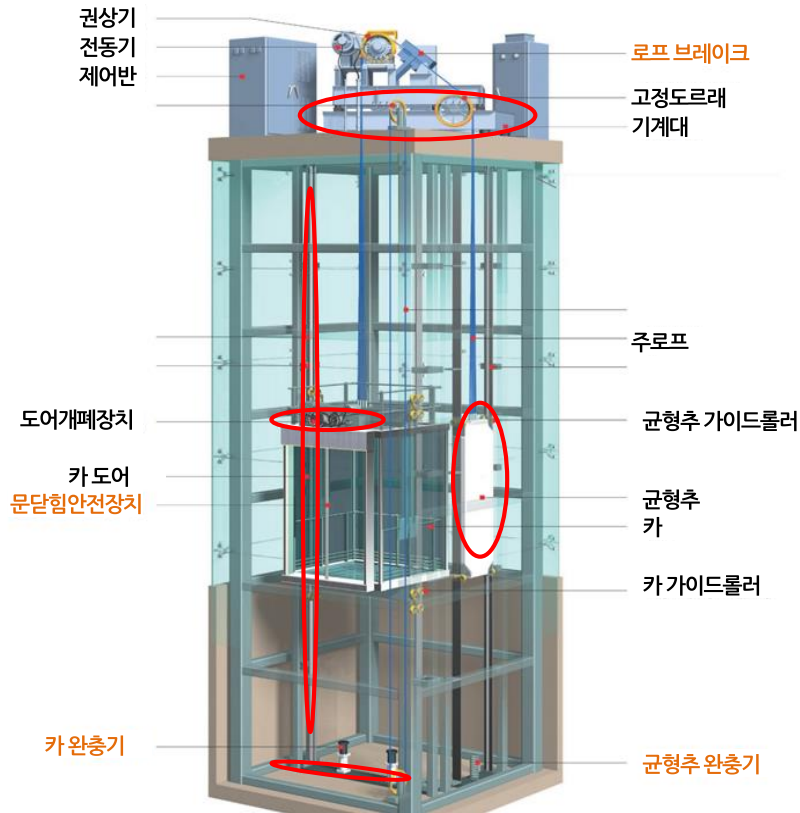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

엘리베이터

- 균형추, 기계대, 완충기 지지대, 주행안내레일, 레일의 부분품, 출입문의 문틀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 골조구조물,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승강장의 보호수단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02 제2조 용어정리

유지관리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 가. 주기적인 점검
-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02 제2조 용어정리

승강기 관리주체

-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다.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해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

03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의 목적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04 제4조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승강기 사업자의 의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노력

관리주체의 의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이용자의 의무는 제46조

관리주체 의무 사항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법 제29조



책임보험 가입

법 제30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법 제31조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법 제32조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부착 의무 등

법 제34조, 제50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보조

법 제47조



중대 사고 및 고장 통보
중대 사고 현장보존

법 제48조

- | | | | |
|--|--|--|-------------------------------|
| <p>① 승강기
운행관리규정
작성 및 유지·관리</p> | <p>② 승강기사고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관리</p> | <p>③ 자체점검 대행 시
유지관리업자 관리감독</p> | <p>④ 중대한 사고 및
고장 시 보고</p> |
| <p>⑤ 이용자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교육 수료자에 한함)</p> | <p>⑥ 피난용
엘리베이터 운행
(교육 수료자에 한함)</p> | <p>⑦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p>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 ①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 ②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
- ③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 ④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
- ⑤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 ⑥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 ⑦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0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



06 제6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시행령 별표2)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견인 도르래(Traction Sheave)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다. 자동구출운전장치
라. 주행안내 레일(Guide Rail) 마. 출입문 개폐장치 바. 출입문 제어장치
사. 출입문 안내수단(Guides)

2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디딤판 경계틀(Demarcation)
다. 디딤판 측면 끼임방지장치(Skirt deflector) 라. 손잡이(Handrail System)
마. 끼임방지 빗(Comb)

06 제6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시행령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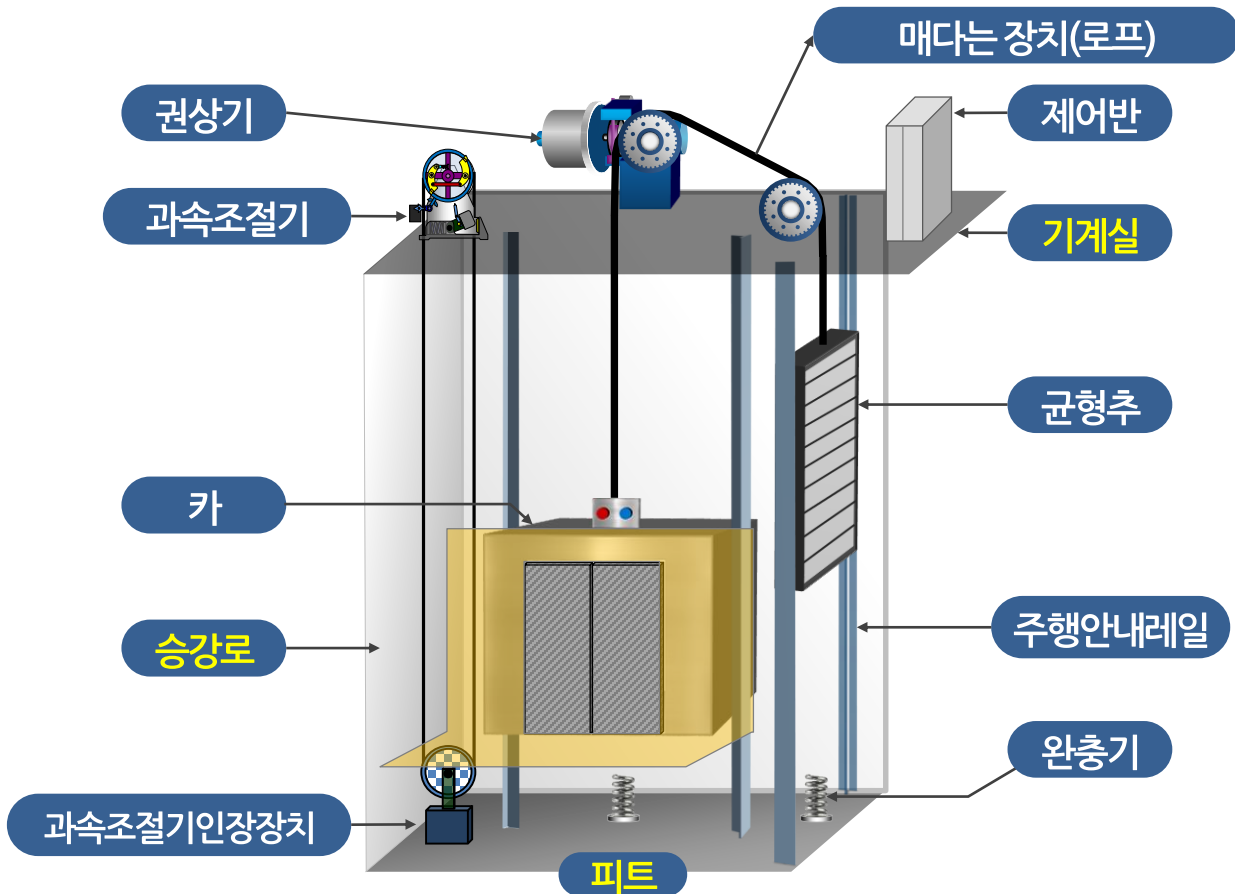
3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시행령 별표 4)

▪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14종)

- | | | |
|------------|------------|------------|
| ① 개문출발방지장치 | ② 과속조절기 | ③ 구동기 |
| ④ 럽처밸브 | ⑤ 비상통화장치 | ⑥ 상승과속방지장치 |
| ⑦ 완충기 | ⑧ 유량제한기 | ⑨ 이동케이블 |
| ⑩ 제어반 | ⑪ 추락방지안전장치 | ⑫ 출입문 잠금장치 |
| ⑬ 출입문 조립체 | ⑭ 매다는 장치 | |

▪ 에스컬레이터(6종)

- | | | |
|------------|----------|--------|
| ① 과속역행방지장치 | ② 구동기 | ③ 구동체인 |
| ④ 디딤판 | ⑤ 디딤판 체인 | ⑥ 제어반 |



06 제6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분류기준(시행령 별표1)

종류	구분기준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
승강기 수입업	외국으로부터 승강기를 수입하는 업
승강기부품 제조업	제9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부품을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
승강기부품 수입업	외국으로부터 제9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수입하는 업

06 제6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록 및 신고절차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



시·도지사



등록증 발급

※ 변경사항, 폐업 또는 휴업 재계 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Q A 승강기부품만을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신규등록 해야 하는지 ?

- ☞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승강기 제조업(일반, 조립)·수입업을 등록한 업체가 승강기부품만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처리
- ☞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승강기 제조업(일반, 조립)·수입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신규 등록 처리

Q A 종전 승강기제조업이 공장 및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 폐업신고를 하게 하거나, 수입업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안내

Q A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9.27(금)까지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 ?

- ☞ 과태료 부과하고, 폐업신고 또는 변경등록 하도록 안내

07 제8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1.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부품과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제공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유지관리용 부품 : 83종, 규칙 제8조)
- 승강기·부품의 결함 여부·부위·내용 등의 점검·정비·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유·무상 제공

2. 유지관리품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 의무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 제공
-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자료 공개

승강기 최종 판매일로부터
10년 이상(영 제11조)

3. 제조·수입업자의 이행을 위한 관리방안

- 제조·수입업자의 의무 미이행 → 시·도지사가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 이행명령 위반 : 제조·수입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법 제9조제5호)

08 제11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은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 (영 제16조 및 별표4)

■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14종)

- | | | | |
|------------|------------|------------|------------|
| ① 개문출발방지장치 | ② 과속조절기 | ③ 구동기 | ④ 럽처밸브 |
| ⑤ 비상통화장치 | ⑥ 상승과속방지장치 | ⑦ 완충기 | ⑧ 유량제한기 |
| ⑨ 이동케이블 | ⑩ 제어반 | ⑪ 추락방지안전장치 | ⑫ 출입문 잠금장치 |
| ⑬ 출입문 조립체 | ⑭ 매다는 장치 | | |

■ 에스컬레이터(6종)

- | | | | |
|------------|-------|--------|-------|
| ① 과속역행방지장치 | ② 구동기 | ③ 구동체인 | ④ 디딤판 |
| ⑤ 디딤판 체인 | ⑥ 제어반 | | |



09 제17조 승강기의 안전인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모델별 또는
개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모델별 승강기 안전인증 절차

신규인증

설계심사

↓
공장심사

↓
안전성시험

정기심사

↓
공장심사

↓
안전성시험

개별 승강기 안전인증 절차

신규인증

현장별로
설계심사만
실시

정기심사

해당없음



10 제27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시행규칙 제46조

- **설치신고 주체** : 승강기설치공사업체(전문건설업자)
- **시 기** : 설치 완료일(설치검사일 아님)로부터 10일 이내
- **방 법** : 신청서류(규칙 별지 제22호)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설치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업체

11 제28조 승강기의 설치검사

시행규칙 제47조

- 설치신고 주체 : 승강기 제조 · 수입업자
- 시 기 : 설치 신고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설치검사 신청
- 방 법 : 신청서류(규칙 별지 제23호)에 필요서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승강기안전인증서, 설치도면, 그 밖의 서류



제조 · 수입업자 : 법 제6조에 따라 시 · 도에 등록한 업체

12 제29조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수료 의무

- 관리주체는 건축물 용도 등에 따른 자격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 가능)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함
-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
-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관리주체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



12 제29조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건축물용도, 승강기종류 또는 그 이외의 건축물에 따른 자격

일반 건축물

다중시설자격,
교육 이수자(어느 하나)

- 승강기관리교육
-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 공단승강기운행기본교육

다중 이용시설 건축물

다음의 자격, 학력, 교육 이수자(어느 하나)

-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 기능사 이상
-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또는 유사학과의 전문학사 이상
- 승강기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공단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자

피난용 엘리베이터

다음의 자격, 학력 요건(어느 하나)

-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 기능사 이상
-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또는 유사학과의 전문학사 이상
- 승강기 실무경력 6개월 이상

12 제29조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대상자, 주기 및 시간(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주기	교육시간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 규칙 별표9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1회	2시간 (1일)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 규칙 별표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1회	12시간 (2일)
일반 승강기관리교육	·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 일반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한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 그 밖에 일반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3년 마다	4시간 (1일)

12 제29조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대상자, 주기 및 시간(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주기	교육시간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별표9 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한 승강기 안전관리자 	3년 마다	12시간 (2일)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제47조 별표9 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한 승강기 안전관리자 	3년 마다	12시간 (2일)

12 제29조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1 승강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사고·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3 유지관리업자
관리·감독



4 중대한 사고 및
고장 시 보고



5 같은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



6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7 그 밖에 일상점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규칙 별표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의 경우에 한정

※ 규칙 별표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의 경우에 한정



13 제30조 보험가입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등(영 제27조 및 별표6)

- 종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시기: 설치검사 받은 날, 관리주체 변경 일, 기존보험 만료일 이내
- 보상한도액: 사망 1인당 8천만원(실손해액 2천만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등
- 보험가입사실 통보: **보험회사**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13 제30조 보험가입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이만수님 환영합니다.
내 정보 수정
로그아웃

승강기안전공단
표준통계
센터소개
홍보자료

승강기안전공단

게시판관리 >

승강기정보관리 >

· 승강기정보 조회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지정인증기관관리 >

승강기 사고 및 고장 관리 >

승강기사고상황전파시스템 >

위해정보 신고내역 관리 >

특별점검및실태조사관리 >

자체 점검 >

지자체연계 >

승강기설치신고 관리 >

유지관리계약관리 >

119구조활동정보관리 >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

지역선택	서울 > 강남구 >	건물명	<input type="text"/>
보장기준일자	2019-10-23	상태	<input type="radio"/> 전체 <input checked="" type="radio"/> 신고 <input type="radio"/> 미신고

검색
역말로보기

서울 전체:	전체 : 146460대	신고 : 124820대	미신고 : 21640대	신고율 : 85.22%
서울 강남구:	전체 : 15725대	신고 : 13696대	미신고 : 2029대	신고율 : 87.10%

총 13696 건 (1/1370 페이지)

승강기호기	승강기번호	건물명 건물주소	보험사명	보장개시일자	보장종료일자
7	0076147	강남대시앙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세곡동, 강남대시앙파크)	롯데손해보험	20190927	20200927
8	0076148	강남대시앙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세곡동, 강남대시앙파크)	롯데손해보험	20190927	20200927
9	0076149	강남대시앙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세곡동, 강남대시앙파크)	롯데손해보험	20190927	20200927
11	0076151	강남대시앙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세곡동, 강남대시앙파크)	롯데손해보험	20190927	20200927
12	0076152	강남대시앙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세곡동, 강남대시앙파크)	롯데손해보험	20190927	20200927

14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결과 조치

- **자체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점검결과 입력
- **운행중지** : 점검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 운행 중지 및 즉시 보수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중지
-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



14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결과 조치



양호

주의 관찰

긴급 수리



5일 이내
정보망 입력

14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주기조정(영 제30조)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의 주기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로 계약서에 점검주기가 3개월의 범위로 적혀있는 승강기

-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장치로 유지관리
- 포괄적 유지관리계약에 따라 유지관리
- 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어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 안전관리우수기업이 유지관리+최근2년 검사 합격
- 다른 법령에서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승강기 (단,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는 제외)

But, 아래의 경우에는 주기 조정 안 됨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

최근 3년 이내에
중대 사고 발생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중대 고장
3회 이상 발생 승강기

[별표3]

자체점검 기준(제13조 관련)

1. 엘리베이터 자체점검기준

※ 판정기준은 해당 엘리베이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기준은 「승강기 안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주기(회/월)
1.1 기계류 공간			
1.1.1 기계류 공간_일반사항			
1.1.1.1 주개폐기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3
1.1.1.2 접근	피트 및 기계류 공간 등의 접근	육안	1/3
1.1.1.3 안전표시	기계류 공간 등의 안전표시	육안	1/6
1.1.1.4 오일콜러	오일콜러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6
1.1.1.5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가)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측정	1/3
	나) 기능 및 작동상태	시험	1/1
	다) 수동 비상운전수단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라) 자동구출운전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1.1.6 통신	승강로(피트) 비상통화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1.1.7 환경	누수 및 청결상태	육안	1/3

점검결과 상태

•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입

상태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
----	----	------	------

※ **주의관찰**: 점검주기와 상관없이 다음달에도 점검 실시

※ **긴급수리**: 해당 승강기의 운영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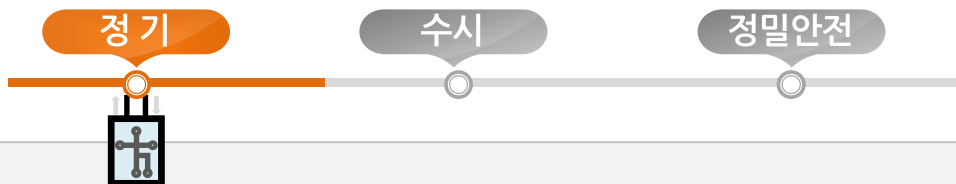
14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 ! 설치검사 합격 이후 최초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

-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라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설치검사에 합격한 달에도 일자와 상관없이 해당 월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 ☞ 현실 등을 고려하여, 설치검사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15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검사종류별 주기(규칙 제5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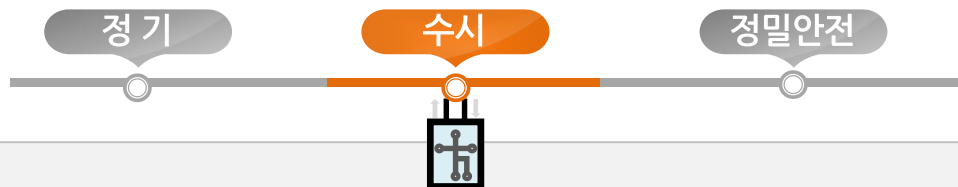
기본주기 -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

- 1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6개월**
- 2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경과한 승강기 : **6개월**
- 3 화물용E/L, 자동차용E/L, 소형화물용E/L : **2년**
- 4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설치 승강기 : **2년**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0일 이내에 합격한 경우
검사주기 도래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15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검사종류(수시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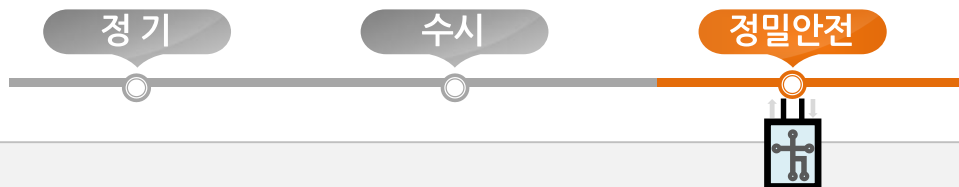


- 1 승강기 종류 · 제어방식 · 정격속도 ·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기준이 완화되는 경우는 제외)
- 2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 3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4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15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검사종류(정밀안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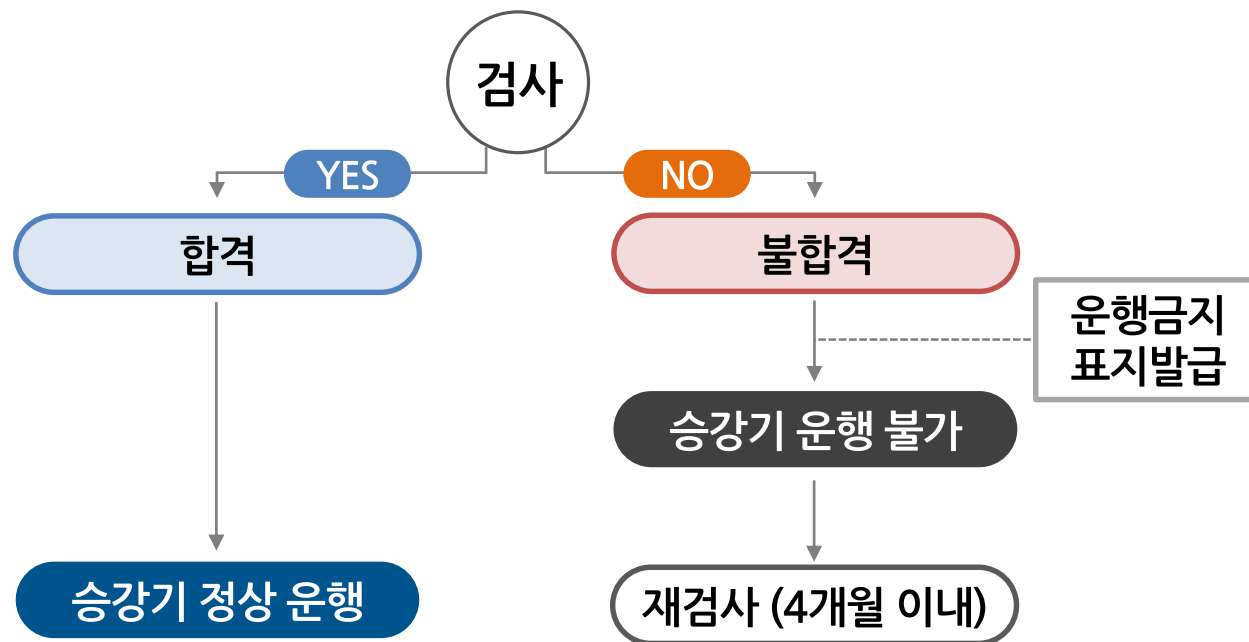


- 1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 2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
- 3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 4 그 밖에 승강기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경우

정밀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검사 면제**



15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15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검사의 연기 신청 등(시행규칙 제57조)

- 1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발생**으로 승강기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의무 승강기는 제외)
- 3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16 제34조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앞쪽)

승강기 운행금지

이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아래의 사유로 불합격했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운영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호(건물명):	승강기번호:
불합격 내용: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장관

(뒷쪽)

승강기 운행정지

이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운영을 정지합니다.

상호(건물명):	승강기번호:
운영정지 기간:	
운영정지 사유: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발급받은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

17 제39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유지관리업의 종류

고속 승강기

종류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대상 승강기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 차별화

분류	속도	용도
중저속 엘리베이터	4 m/s 이하	아파트 및 빌딩
고속 엘리베이터	4 m/s 초과	대형빌딩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빌딩들

● 높이(m) ● 층 ● 엘리베이터 속도(m/s)

	광저우 CTF 파이낸스 센터	상하이 타워	타이베이 101	현대아산 타워	롯데월드 타워	부르즈 할리파
1	530	632	508	205	554.5	828
2	111	128	101	-	124	163
3	20	18	16.8	18	10	10

17 제39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등록 절차 등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시·도지사



등록증 발급

※ 변경사항, 폐업 또는 휴업 재계 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17 제39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영 제33조) 및 등록절차(규칙 제61조)



18 제41조 표준유지관리비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고, 활용하도록 권고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표준유지관리계약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용하도록 권고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18 제41조 표준유지관리비



표준유지관리비 70% 이하 계약 현장

→ 정부합동 실태점검 대상

동일 장소의 승강기 대수별 대당 할인비용 적용

(2~3대) 20천원	(4~5대) 27천원
(6~7대) 30천원	(8대 이상) 32천원

표준유지관리비 산정 전제조건

- 유지관리대수 1대, 1개월, 2인 자체점검 기준
- 월 1회 자체점검, 고장발생 시 수리
- 야간·휴일 비상대기·출동, 정기검사(연1회) 입회
- 단순유지관리(P.O.G) 계약 기준

18 제41조 표준유지관리비

※ 2020년, 공동주택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기준층 또는 길이	기준 유지관리비		체증요금		
		일반	휴일/야간	일반	휴일/야간	
엘리베이터	승객용, 화물용	6층	180,000	204,800	2,900	4,300
	장애인용	6층	185,000	210,300	2,900	4,300
	소방구조용	10층	209,000	238,400	2,900	4,300
	피난용	30층	350,000	409,800	2,900	4,300
	화물, 자동차용	3층	182,000	207,400	2,900	4,300
	소형화물용	3층	149,000	168,900	2,400	3,300
	경사형	8m	236,000	272,500	2,600	2,700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8m	247,000	283,900	2,100	3,000
휠체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4m	158,000	179,300	-	-
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4m	154,000	174,300	1,400	1,500

※ 판매·운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 승강기: (생략)

19 제42조 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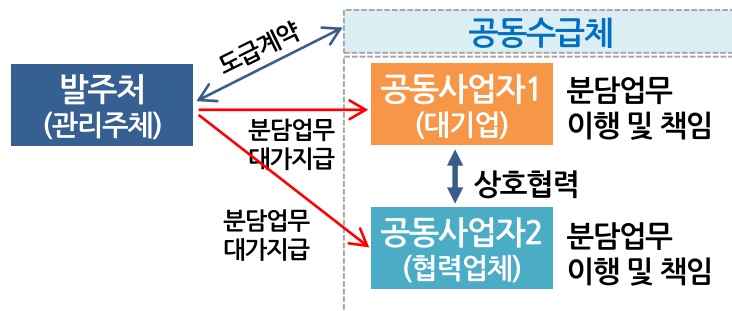
관리주체 서면동의(업무내용 및 범위, 원도급과 하도급 금액)가 있으면 가능

하도급의 조건 (시행령 제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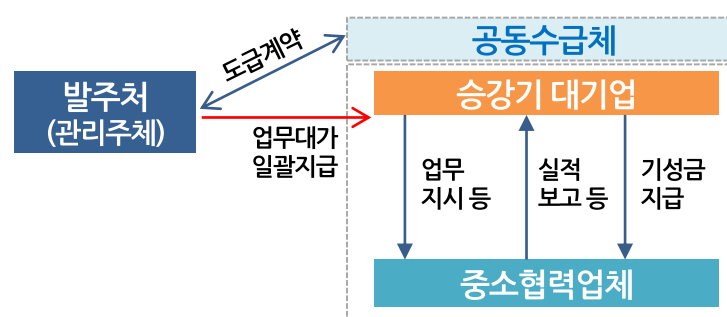
- 유지관리업무(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
- 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무의 2분의 1 이내
- 자체점검업무(횟수)의 3분의 2 이내

19 제42조 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표준 공동도급 계약 구조



편법·탈법적 하도급 계약 구조



〈표〉 공동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 간의 비교

구분	공동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계약대상	2인 이상의 공동수급체	원청업체
대가지급	발주자 → 구성원 각자	발주자 → 원청업체 → 하청업체
내부관계	구성원 각자 분담업무만 관리·책임 (구성원 간 실적관리, 업무지시 등 불가능)	원청업체가 총괄 관리·책임 (하청업체 실적관리, 업무지시 등 가능)

20 제43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

규칙 제66조 제1호,2호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 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가 포함된 기술자의 경우 월간 90대 이하로 함

규칙 제66조제3호 공동도급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전체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공동 도급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16조)

-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해야 함

21 제46조 승강기 이용자의 의무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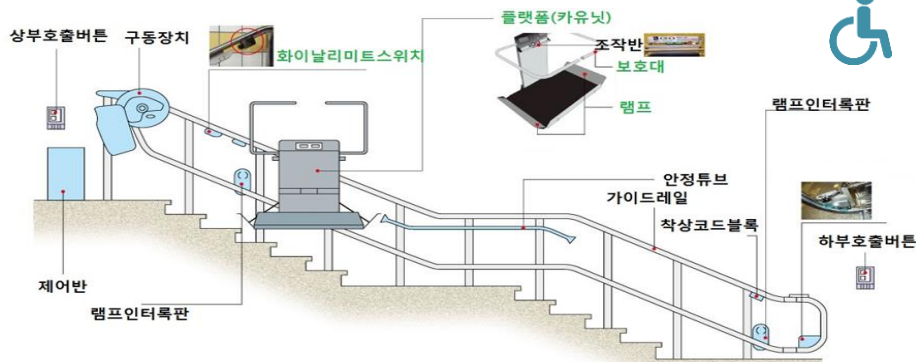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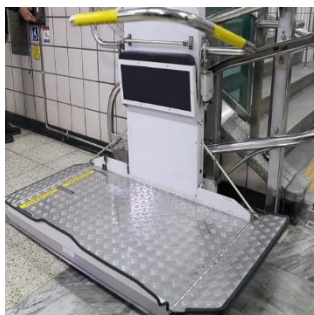


{ 정원 초과 탑승 금지
정격하중 초과 화물 적재 금지
행정안전부 고시 사항

22 제47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
- 승강기 관리주체는 소속직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조작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규칙 제68조)



23 제48조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23 제48조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사고 및 고장 보고(시행규칙 제69조)

중대한
사고

건물명, 소재지, 승강기 고유번호,
사고발생 일시, 피해 정도



지체없이
통보

중대한
고장

건물명, 소재지, 승강기 고유번호,
고장발생 일시, 고장내용



지체없이
통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가능

23 제48조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중대한 사고

- 사망자 발생 사고
-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의사의 최초 진단이 1주 이상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고

중대한 고장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 ㉠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 ㉡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 ㉢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 ㉣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운행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에스컬레이터

- ㉠ 손잡이의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 ㉢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한 경우
- ㉣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24 제50조 운행정지 명령 등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 설치검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 자체점검 미실시, 안전검사 연기 또는 불합격 승강기
-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승강기

운행정지표지 부착

훼손되지 않게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여부와 운행정지표지 부착 여부 확인

25 제51조 기술자의 경력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는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신고)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법 제51조 및 영 제 43조)

-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 2 유지관리
 - 3 **부품안전인증**
 - 4 **승강기안전인증**
 - 5 **설치검사**
 - 6 **자체점검**
 - 7 **안전검사**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설계 자문, 설치공사, 설치공사 감리)
- 직무교육
- 기술교육

25 제51조 기술자의 경력신고

기술자 경력신고서				
<small>※ 직함이 어두운 색(■)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흰색(□)은 확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small>				
접수번호	접수일	발령확인	처리기간 3영업	
신고인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진 (3.5cm × 4.5cm)
	소속 업체명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①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② 자격종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발급기관
③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기술인력 구분	담당 업무
	~			
	~			
④ 교육훈련 사항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수료번호
	~			
	~			
<small>「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을 신고합니다.</small>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승강기사업자 협회장 귀하				
<input type="checkbox"/> 행정안전부장관				
붙임서류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small>210mm×297mm, 뒷면지(50g) 이하용 종이(50g/㎡)</small>				



- 경력신고기관 : 공단
- 경력신고서 기재사항(규칙 별지 제39호) : 학력, 기술자격, 경력, 교육사항 등
- 경력신고 수수료 : 없음
- 경력증명서 발급 : 3,000원/1,000원

26 제52조 기술자 교육

기술 교육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① 승강기나 부품의 제조·수입
- ② 유지관리
- ③ 승강기 설치 공사
- ④ 승강기 설계 자문
- ⑤ 승강기 설치 공사 감리

직무 교육

안전인증,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 ① 부품 안전 인증
- ② 승강기 안전 인증
- ③ 설치검사
- ④ 자체점검
- ⑤ 안전검사

27 제54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 ①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 ①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①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①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8 제57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사업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 승강기 기술인력에 대한 양성 및 관리
-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 업무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 받은 업무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9 제65조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01 안전산업 진흥 기반조성 (제65조)

- [종합시책] 정부는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시책 마련·추진
- [산업지원] 안전산업 기술개발 또는 사업수행 자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02 우수기업 선정 확대 (제66조)

- 유지관리업자로 한정되어 있던 우수기업 선정 제도가
-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규칙 제76조)

04 협회 설립 (제6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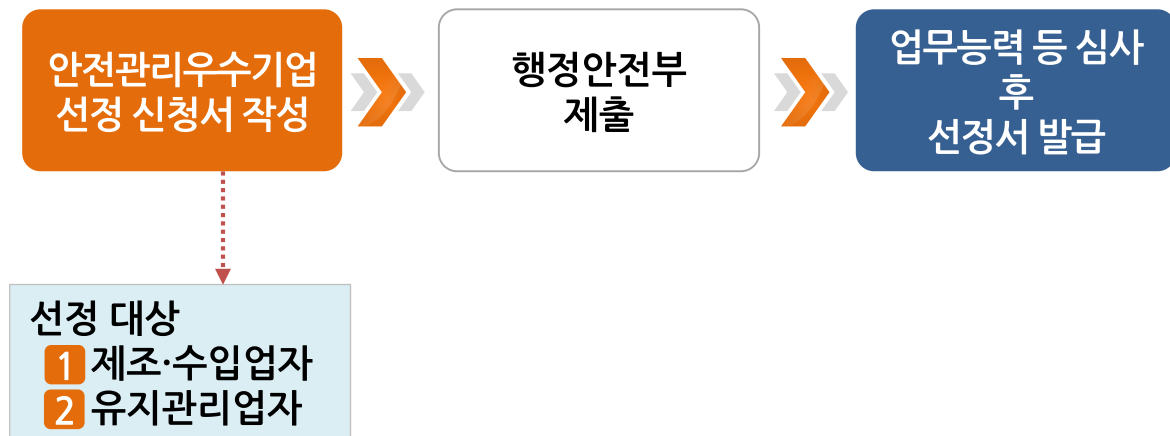
- 승강기 사업자는 승강기 안전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03 승강기사업자간 협력 규정 (제67조)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지관리업자의 상생협력(기술·정보 교환, 지원 등)
- 상생협력평가 및 공동도급 등 지도

30 제66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등(시행규칙 제78조)



31 제7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정보 또는 공개 정보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 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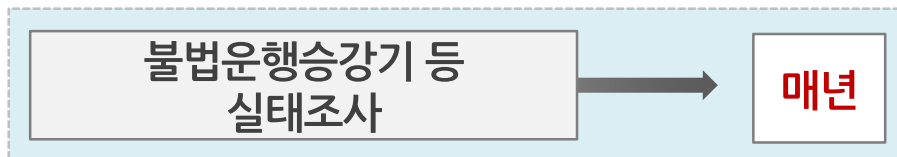
31 제7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구축·운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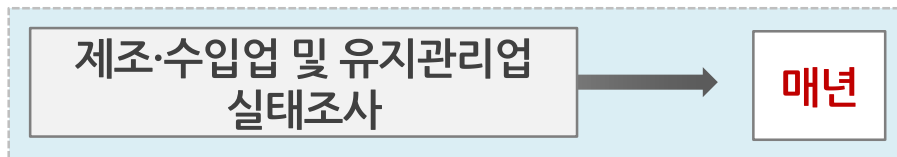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처분 현황
- 2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 현황
- 3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 4 보험 가입 현황
- 5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 6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 7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 8 기술자의 신고 현황
- 9 실태조사 현황
- 10 과태료 부과 처분 현황
- 11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한 현황
-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32 제74조 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 ▶



시·도지사 ▶



33 제80조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거나 업을 한 자
- ②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위반 제조업 또는 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 ③ 불합격 승강기 운행자
- ④ 운행정지 명령 위반한 자

33 제80조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유지관리 하도급 위반자
- ①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자
- ① 승강기 결함에도 보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행하게 한 자
- ① 장애인용 승강기 운행 요청 거부 또는 안전하게 조작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34 제82조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 ① 자체점검 미자격자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34 제82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①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 ① 자체점검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① 승강기에 결함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영의 중지를 방해한 자
- ①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영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①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①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34 제82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①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 ①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 ①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4 제82조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 ③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기술자

3 승강기 관련 고시 이해



고시
(12종)

01 승강기 관련 고시 제·개정 목록

-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전부개정)
- 승강기 안전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전부개정)
-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전부개정)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전부개정)
- 승강기 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정)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전부개정)
-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02 제조업 · 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 규정

제조 · 수입 · 유지관리업 신규등록 현장확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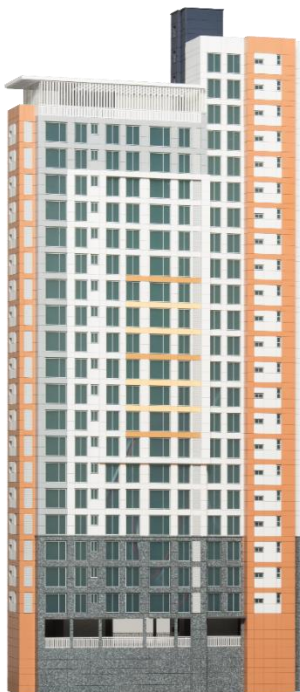
- 시·도지사는 승강기 제조업 · 수입업 · 유지관리업 **신규등록 신청** 시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장심사** 실시
※ 종전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현장심사
- 시·도지사는 승강기 제조업 · 수입업 ·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심사**

사유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시 변경등록 내용 및 등록요건 등 확인

제조 · 수입 ·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정

- **코드(예) : 지역구분 + 자치단체코드 + 업종구분코드 + 일련번호**

03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품질보증 강제 이행명령

-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정비해주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요청
- 시·도지사는 공단,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승강기 유지관리매뉴얼 제공

- 유지관리업자가 요청할 경우 **2일 이내** 제공
- 해당 모델 최종 판매일로부터 **10년 이상** 제공
- 외국어 매뉴얼의 경우 **국문으로 번역 후** 제공

0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설치검사

신청시기

설치신고 다음날까지

결과 통보 시기

- 합격 : 신청인에게 5일 이내
- **불합격** : 신청인에게 3일 이내
지자체에게 당일
- 보완 : 신청인에게 5일 이내

보완 시 보완기간

30일 이내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시기

- 정기 · 정밀 : 당해 정기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
- 수시 : 사용하려는 날 15일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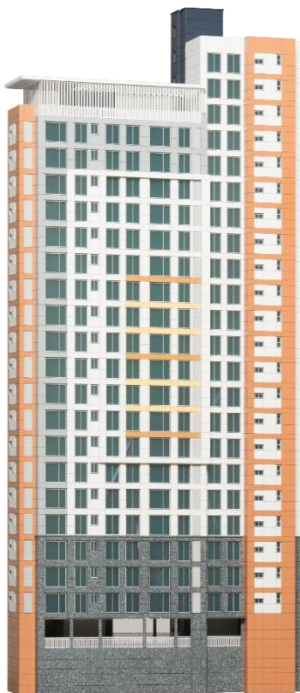
결과 통보 시기

- 합격 : 신청인에게 5일 이내
- **불합격** : 신청인에게 5일 이내
지자체에게 당일
- 조건부합격 : 신청인에게 5일 이내

조건부합격 보완기간

30일 이내 (※ 수시검사는 30일 이내)

05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안전관리자의 안전 훈련 (신설)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 피난용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안전보건 규정 준수 (신설)

- **목적**: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지키기 위함
- **내용**: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체점검**을 실시 또는 대행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서 1년 경과조치 부여(2020.3.28.부터 지적)

06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운영규정

공동도급계약 유형별 계약이행 책임

-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
-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 각자가 분담하기로 한 부분만 책임

대가의 지급 방법

- 공동수급체의 지급청구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대가 지급
-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받은 **유지관리 업무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 가능

07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직무교육 운영규정

경력 등에 관한 신고 시기 (신설)

-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시간 (강화/개선)

- (신설) 기술교육 교육시간 : 28시간 (3년 주기 보수교육은 14시간)
 - ※ 시·도에 제조·수입·유지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의무교육**,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인력과 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은 **자율 교육**
- (강화) 직무교육 교육시간 : 28시간 (3년 주기 보수교육은 14시간)
 - ※ **의무교육**, 현행 2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증가,
자체점검인력 직무교육을 이수한 유지관리업체 기술인력은 기술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별표1 비교)

4 승강기 관계 법령 이해



01 건축법

🔧 승강기 설치 의무 규정 등 (제64조)

- 승강기를 건축물 설비의 하나로서 분류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따른 승강기 의무설치 대수 등 승강기 (승객용, 비상용, 피난용) 설치기준을 건축규모 등에 따라 규정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²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객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함 (건축법 제64조 제2항)
- 보다 세부적인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 규정
 -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
 -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봄



01 건축법

🔨 승강기 설치 의무 규정 등 (제64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함
(건축법 제64조 제2항)

- 면적이 1,500m² 이하 : 1 대 이상
- 면적이 1,500m² 를 초과 : 매 3,000m²마다
1대씩 추가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01 건축법

승강기 설치 의무 규정 등 (제64조)

-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초고층건축물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

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10층 이상인 공동주택

-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
 -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 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6층 이상인 공동주택: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

제외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m²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0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사업종의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도 등록 필요

등록기준

- 승강기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승강기 설치공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반송설비 공사업 등록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반송설비공사*
로 규정, 전기공사업을 등록해야만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등록기준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반송설비공사: 이동보도(무빙워크),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덤웨어, 권상용
모터, 레일, 카, 컨베이어, 슈터, 곤돌라,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04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승강기(장애인용 승강기)를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 분류하고, **건물의 용도** 등에 따라 편의시설의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의 및 안전장치 등에 관해 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승강기(장애인용 승강기)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분류하고, **여객시설** 등에 따라 편의시설의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의 구조 및 안전장치 등에 관해 규정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